예 산 총 칙

2025년도 예산

제 1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437,765,305	73,132,958
일반회계	2,082,675,647	62,480,269
특별회계	355,089,658	10,652,689
공기업특별회계	207,154,098	6,214,622
상수도사업	71,363,264	2,140,897
하수도사업	135,790,834	4,073,725
기타특별회계	147,935,560	4,438,067
공유재산관리	7,855,762	235,673
의료급여기금	10,829,638	324,889
교통사업	41,743,103	1,252,293
철도건설사업	45,761,220	1,372,837
폐기물처리시설	4,317,357	129,521
도시개발	5,634,711	169,041
공공시설등 설치	27,499	825
도시재생	26,250,180	787,505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5,515,290	165,45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800	24

제 2 조 세입 ·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와 같다.
단, 각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한다.

제 3 조 2025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2025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202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0,353,882천원으로 한다.

(1) 일반예비비 16,966,806천원

(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00천원

(3) 내부유보금 1,387,076천원

제 7 조 2025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92,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